

# 학 회 인 준 및 관 리 규 정

제정	1974.	1.	28
개정	1980.	1.	10
개정	1987.	9.	21
개정	1998.	11.	10
개정	2000.	10.	21
개정	2003.	7.	8
개정	2012.	12.	18
개정	2018.	12.	18
개정	2019.	3.	19
개정	2020.	3.	24
개정	2021.	4.	6
개정	2021.	10.	19
개정	2022.	7.	19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61조에 의하여 신설학회 인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4.6.)

제 2 조(학회분류 및 정의) ① 분과학회는 기간학회, 세부학회, 융합학회로 구분한다.(신설 2020.3.24.)

② 기간학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회이다.(신설 2020.3.24.)

1. 전국 치과대학, 치의학전문대학원의 1/2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
2.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
3.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으로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, 인정되는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회

③ 세부학회라 함은 기간학회로부터 파생, 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이다.(신설 2020.3.24.)

④ 융합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.(신설 2020.3.24.)

1.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

2. 의학, 공학, 생물학 등의 타 학문분야와 융합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

제 3 조(인준신청 및 심사절차) ① 학회 인준을 신청하는 학회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제반 서류를 접수한다.

② 인준을 신청하는 학회는 제2조에 따라, 기간학회, 세부학회, 융합학회 중 해당하는 학회로 택일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인준 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, 협회는 신청학회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학회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. 학회인준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학술위원회의 학회 인준 추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④ 신청 학회는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협회와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접수마감일 60일 이내에 신청 학회에 통보한다.

⑥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 학회는 결과 통보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협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 공문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학술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학회에 대해 학회인준 추천여부를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원회의 출석과 의결은 위임할 수 없다.

⑧ 신청 학회는 학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⑨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인준추천이 의결되면, 학술위원회는 해당 학회를 이사회에 인준추천하고, 이사회에서 인준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.

⑩ 인준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, 차기 년도에 연속해서 다시 인준 신청을 할 수 없다. 단, 기간학회 인준 심사를 탈락한 경우, 차기년도에 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 신청은 할 수 있다. (본조 전문개정 2022. 7.19.)

제 4 조(취소) 학회인준을 받은 후 해당학회가 관련 규정에 의한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학술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

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취소를 의결한 후,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.(개정 2018.12.18., 2021.4.6., 2022. 7.19.)

제 5 조(명칭) 학회명칭을 사용할 경우 인준을 받지 않은 학회는 명칭앞에 “가칭”의 문구를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.(개정 1998.11.10., 2018.12.18.)

제 6 조(기타) ① 학회로 인준되면 협회 분과학회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, 동시에 대한치의학회 회원이 된다.(신설 2020.3.24)

② 분과학회의 관리는 분과학회 협의체인 대한치의학회의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.(신설 2020.3.24)

③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(개정 2018.12.18., 개정 2020.3.24)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,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인준된 학회는 기간학회로 본다.(신설 2020.3.24.)
3.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실시된 활동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.(신설 2022. 7.19.)